

제 1116 호
1985. 6. 20

발행인 : 서울특별시 종합보원
편집인 : 공보관 조남호
전화 : 731-6111-3
주소 :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
전화 : 735-3337

시보

차 례

◎ 고 시

- 제 401 호 :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
- 제 402 호 :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3
- 제 403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44-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4

◎ 공 고

- 제 360 호 : 서울대공원공원시설 (운동시설) 설치변경허가 4

공 보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01 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 철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3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7조의 2 및 제 6조와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 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5. 6. 20
 서울특별시장

구분	내용	위치	규모	비고
기정	철도(본선)	도봉구월계동 256-1도봉동 368-3	7,500 M	시행선변경 (L=320 M) 위차이동 (L=200 M) 녹천
변경				
기정	철도(정차장)	도봉동 368-3 일대	11,908 M ²	
변경		도봉동 368 일대	30,890 M ²	
신설		월계동 700-3 일대	8,665 M ²	

◎서울특별시고시제 402 호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1. 도심재개발사업 마포로 제 1구역 제 44-1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 5조,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같이 변경결정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마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6. 20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결정조서 (마포로 제 1구역)

1) 건축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	주 용 도	배 열
기정	제 44-1	2,583.3㎡	39%	692%	19/5	업무시설(지하 1층판매)	생략
변경	"	"	38.1%	669.8%	"	"	"

◎서울특별시고시제 403 호

마포로제 1 구역제 44-1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 285 호 (79.9.21)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 146 호(80.5.19) 로 사업계획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 234 호 (84.4.27) 로 사업계획결정된 마포로 제 1 구역 제 44-1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8 조,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하고 동법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5. 6. 20

서울특별시 장

가. 인가내용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마포로 제 1 구역 제 44-1 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마포구 도화동 18-2 일대 (3필지)
- 3) 시행면적 : 2,882.9㎡
- 4) 시행자 : (주)창강주택 대표 안병오, 안병승
- 5)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용산구 한남동 1-44 번지
- 6) 시행기간 : 85.6.20 - 88.5.31

7) 건축계획 (건축규모 및 배열은 건축허가로 확정함)

- 대지면적 : 2,583.3㎡
- 건폐율 : 38.1%
- 용적율 : 669.8%
- 층 수 : 지상 19층, 지하 5층
- 주 용 도 : 업무시설 (지하 1층, 판매시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9) 사업시행 계획서 : 별첨

10) 규 약 : 별첨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60 호

서울대공원공원시설 (운동시설)
설치 변경 허가

1. 건설부고시제 248 호 (85.6.12) 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제396 호 (85.6.18) 로 지적승인된 서울대공원 운동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 조 및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인다. 1985. 6. 20 서울특별시장		서울대공원 운동시설 조성공사 리. 사업시행변경: 별첨 마.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한양건축 현 종락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착공일: 1985. 2 준공일: 1986. 12 사. 사용할 토지명세: (생략) 아. 토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자. 위치도 및 평면도: 별첨(도면생략)
가. 사업시행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363 일대 나. 면적: 36,300㎡ 다. 사업의종류: 5대 명칭: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운동시설 사업 계획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조경시설	녹지대 조성, 가족단위 휴게소 파고라, 음수대, 시계탑 안내판등	과 동
운동시설	테니스장 9면 실외플장 3개소 하이스라스 1개소	과 동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1동 보일러 및 정수기계실 2동	관리사무소 1동 보일러 및 정수기계실 1동
유희시설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8종
편익시설	간이매점 4동 서어비스(샤워)등 2동 화장실 3동 매표소 1동	간이매점 2동 서어비스(샤워)등 2동 휴게소, 화장실복합 2동 매표소 1동
기타	공작물 138기 (수영장, 비치파라솔, 광고판, 가로등, 스펀드, 공중전화등)	공작물 163기 (수영장, 비치파라솔, 광고탑, 가로등, 스펀드, 어린이놀이시설, 공중전화, 간이화장실등)